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단188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변론 종결 2020. 10. 16.

판결 선고 2020.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도로 1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4, 18, 4,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에 관하여 2015. 6.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28. 서울 동작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원고의 토지는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C 도로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연접하여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4, 18, 4,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축조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83. 3.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E이 1995. 6. 1.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로 허순혜 등에게 순차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3. 6.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용폐지되어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1995. 6. 1. E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이래로 순차적으로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위 E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15. 6.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2015.6.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사정 당시부터 하천이었던 곳으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현재까지

용도폐지된 사실이 없거나 1973. 4. 25. 도로로 결정고시되어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건물 부지의 형상에 비추어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참조).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아니한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인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62253 판결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경기도 시흥군 F리(현재 서울 동작구 G동)의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는 그 지목이 천(川)으로 표시되어 있고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는 카드식 토지대장에 서울동작구 H(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로, 그 지목은 하천으로 등록되었고 피고가 1969. 11. 13. 사정받은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하여 1980. 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위 모토지는 1981. 7. 7. I, J 내지 K, L, M, N, O, P과 합병되었고 그 지목이 하천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 2007. 6. 8. 위 모토지로부터 Q 도로 199㎡, C 도로 14㎡가 분할되었고, 2008. 12. 2. 위 C 도로 14㎡로부터 R 도로 4㎡가 분할됨으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그 현황에 따라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피고 소유의 공공용재산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묵시적 공용폐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변상금 부과 통지, 지목 변경, 하천의 기능 사실 등의 사유 및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폐지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지현

감 정 도

